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505-0627459
신청일	2025-05-16 06:29:55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물류창고(창고시설)내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
내용	물류창고(창고시설)내 적층식 랙이 근로자들의 상시 작업장으로 사용될 때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와 이를 증축으로 보아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요? 자세한 질문은 첨부파일에 기록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적층식 랙 바닥면적 산입 질의_2025.5.16.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5-0579783
접수일	2025-05-16 13:58:57
담당자(연락처)	전준하 (044-201-4841)
처리에정일	2025-05-2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통지일	2025-05-19 15:10:55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요지 ○ (질의 가) 적층식 랙 설치 시 면적산입 여부 ○ (질의 나, 다) 적층식 랙 설치 시 행정절차 관련 질의 2. 답변 내용 질의 "가"와 관련하여,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해 건축법령을 운영함에 있어 창고시설(공장 등에 부속되는 창고시설) 내 설치하는 적층식 랙(한국산업규격 종전 KS A 2163, 현행 KS T 2027에 정의된 '산업용 랙'의 일종)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이고, 필요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이전 등이 가능하며, 적층식 랙 자체만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 되는 구조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적합한[①창고시설(공장 등에 부속되는 창고시설) 내 설치하는 지, ②적층식 랙(한국산업규격 종전 KS A 2163, 현행 KS T 2027에 정의된 '산업용 랙'의 일종)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인지, ③필요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이전 등이 가능한지, ④적층식 랙 자체만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 되는 구조물로 볼 수 없는지 등] 경우에만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의 경우, 해당 구조물이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 다"와 관련하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 질의의 경우, 해당 시설 설치 시 증축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건축법령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나, 민법상 제도로써 추진제도를 통해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운용 중에 있습니다.

3.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8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한마디 더	